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재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506 발의연월일: 2020. 10. 14.

발 의 자:이재정・김영호・김진표

안민석 · 임오경 · 민홍철

정태호 · 윤재갑 · 오영환

도종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세탁기,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과 최근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무인정 보단말기의 경우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제작·운영되 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.

한편, 현행법령에 따르면 교육기관, 의료기관 등(이하 "행위자 등"이라 함)은 생산·배포하는 전자정보 등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사람과 동등하게 접근·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,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근거가미비한 상황임.

이에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·운영하는 재화·용역 등의 제공자 및 가전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 게 접근·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 록 하고, 행위자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때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·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가전제품, 무인정보단말기 및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1조제2항 신설 등).
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재화·용역 등의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(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, 주문·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)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 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·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 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
- ④ 냉장고,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가전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
- ⑤ 제3항에 따른 재화·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, 제4항에 따른 가전제품의 품목,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.

제2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6항) 중 "내용과 제2항에 따른"을 "내용, 제2항에 따른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, 제3항에 따른"으로, "제3항"을 "제4항"으로, "제4항"을 "제5항"으로 한다.

② 행위자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이동통신단말장치(「전파법」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)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·무선 정보통신을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·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재화・용역 등의 제공에	제15조(재화・용역 등의 제공에
있어서의 차별금지) ①·② (생	있어서의 차별금지) ①·② (현
략)	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③ 재화・용역 등의 제공자는
	무인정보단말기(터치스크린 등
	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
	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
	발급, 주문·결제 등을 처리하
	는 기기를 말한다)를 설치・운
	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
	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
	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
	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
	야 한다.
<u><신 설></u>	④ 냉장고, 세탁기 등의 가전제
	품을 제조하는 사업자는 장애
	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
	하게 가전제품을 이용할 수 있
	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
	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
<u><신 설></u>	⑤ 제3항에 따른 재화・용역
	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
	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,

제21조(정보통신·의사소통 등에 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) ① (생 략)

<신 설>

② ~ ⑤ (생 략)

⑥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

제4항에 따른 가전제품의 품목,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 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1조(정보통신·의사소통 등에 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행위자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동통신단말장치(「전파법」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)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・무선 정보통신을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・이용할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단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

항까지와 같음)

<u>(7)</u>	 	 	 	 	 	 	 -
	 	 	 	 	 	 	 _

단의 구체적인 <u>내용과 제2항에</u>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, <u>제3항</u>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, <u>제4항</u>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편의의 구체적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<u>나</u>]용,	제2	항에	따	르 행	위자	등
의	단기	계적	범위	및	정당	한 핍	<u></u>
의	구	체적	인 ા	귀용,	제3	항에	叫
른-							
					제4형	<u>j</u>	
	<u>7</u>	에5형	<u>}</u>				